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인권교육 및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정책논쟁 분석과 기독교학교에서의 동성애수업 방향

장슬기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소장, 높은뜻씨앗스쿨 교감)

I.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인권교육 및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정책논쟁 분석

'교육¹⁾'은 미래사회의 씨앗을 다음세대에게 심는 가치로운 과정이며, 동시에 다양한 가치관들이 치열하게 충돌하는 영역이다. 즉 특정의 신념을 가진 다양한 단체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한국사회를 재구축하기 위해 교육의 영역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 '정치'가 현재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이데올로기의 전쟁터라며, 미래사회를 선점하려는 전쟁터가 '교육'의 영역인 셈이다.

언론을 통해 교육계 곳곳에서 가치관의 충돌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반공교육과 평화교육의 혼란', '진화론과 창조과학 논쟁', '학생부종합전형과 같은 수시전형을 둘러싼 힘겨루기', '유치원 3법의 난항',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등학교 우선선발권 폐지' 등은 집단화된 가치관의 충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며, 최근 국정교과서 폐기로 종료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논란은 그 정점을 보여주었다. 당시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여 서울대, 고려대 외 전국 70개 대학 역사학과 교수들, 국정 교과서 반대 및 집필거부를 선언하였었고, 479개의 시민단체 등에서 국정화 반대를 표명하였었다.

앞선 교육적 이슈들 그 이상으로 '인권교육의 틀에서 제기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교육'은 교육계에 큰 내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향방에 따라 앞으로 한국사회 미래상의 한 면이 결정하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본 인권교육, 성소수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논쟁, 교육현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충돌의 상황들을 소개하려한다. 더불어 학교현장에서 시도했던 '동성애 바라보기'라는 수업의 단상을 나누려한다.

2015 개정교육과정과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교육은 시기마다 개정되어지는 '개정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을 준수하여, 국가교육기관들의 교육정책과 학교교육이 전개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기에, '개정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은 매우 큰 구속력이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교육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

1) 교육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많은 교육학자들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내렸다. 이에 관해 기능적 정의, 규범적 정의, 준거적 정의 등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교육의 정의'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생략하고, 규범적 정의(normative definition)의 관점에서 교육을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실현해 가는 과정으로 보고 서술하였다. 규범적 정의는 정의를 내리는 사람의 가치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는데,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차별금지교육에 대해 다양한 가치를 가진 개인과 단체와 기관의 개입은, 교육계에 또다른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교육이념은 한국교육의 대전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시대와 시기에 따라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현재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활동과 교육내용의 가장 큰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 총론에서는 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중핵적인 인간상으로 정의하며, 이를 위해 6가지 역량을 키우는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축하였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총론과 더불어 각론에서는, 교과 교육과정의 시안(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체제, 성취기준, 교수학습법, 평가방법 등)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데, 그 중 성소수자 즉 동성애와 관련있는 '인권교육'이 포함된 사회과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인권, 사회적 소수자, 차별'이 명기된 과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문화」 중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계층과 불평등 현상을 살펴보고 이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을 이해한다. 또한, 사회 이동의 양상과 사회 계층 구조의 유형 및 특징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사회적 소수자, 성 불평등, 빈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회 복지의 의미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복지 제도의 유형과 특징을 탐색한다.

사문 04-03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와 유형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사회문제 탐구」 중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5)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이 단원은 여러 층위의 사회 문제 중 지구촌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탐구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이를 위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탐구 주제로 선정하였다.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지구촌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창의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사탐05-01 사회적 소수자 및 차별의 의미를 이해하고, 대중 매체(TV, 영화, 광고 등)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차별 양상을 파악한다.

사탐05-02 사회적 소수자 문제가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문제 탐구 절차를 적용하여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한 탐구 계획을 수립한다.

사탐05-03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발생 원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고, 토의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사탐05-04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사회의 제도 및 기구(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를 탐구하고, 관련 직업에 대해 조사한다.

사회교과 중 「사회·문화」과목과 「사회문제 탐구」과목에는 '사회적 소수자, 성 불평등'에 대한 차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인권문제에 대한 차별 개선방안을 탐구하고 실천하도록 성취목표로 삼고 있다. 분명 '인종과 민족과 신체와 종교와 빈부와 성'에 대한 차별을 개선은, 모든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평등과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사회교육의 영역임은 분명하다.

여기서 사회교과 중에는 동성애를 인정해야한다는 명시적 표현은 없으며 '성소수자'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 역시 관찰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문화」과목의 '4. 단원 사회계층과 불평등'에서 성취기준 해설을 살펴 보면 '인종, 민족, 국적, 신체, 종교, 취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성적취향으로서의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해설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교사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의 한 축으로 '성소수자'가 소개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는 셈이다.

○ 주요 성취 기준 해설

- 사문04-02를 통해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의 다양한 유형과 양상을 살펴보고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사문04-03을 통해 인종, 민족, 국적, 신체, 종교, 취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성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 주요 학습 요소

- 사회 불평등, 기능론, 갈등론, 사회 이동, 사회 계층 구조, 사회적 소수자, 사회 복지, 복지 제도

이와 더불어 핵심적인 논쟁의 지점은, 「사회문제 탐구」과목에서 '사탐05-04'에 표현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사회의 제도 및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사회교육적 측면에서 인권문제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소개하는 것에 대해, 그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정책적 행보는 분명 한쪽으로 편향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이처럼 학교의 '인권교육'이 2015 개정교육과정과 해설을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에서 언급된 2015 개정교육과정과 상관없이도, 학교의 인권교육에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인권교육’을 둘러싼 교육정책의 충돌

공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의 방향은, 2015개정 교육과정 뿐 아니라 국가인권정책과 교육정책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정책이 국가기관차원에서 전개되어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여성가족부가 제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를 수립하는 과정 가운데, “여성·남성이 함께”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동시에 의도적으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시도²⁾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현정부에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가진 개인들이나 단체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성평등정책을 포함한 제 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추어 새로이 수립되었는데,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P)’으로 통용되어지는 이 기본계획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대변할 국회를 배제한 채,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모든 교육기관 등³⁾에 NAP의 적용·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편성과 형평성을 근간해서 인권정책 주도해야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부터 퀴어행사에 참여·지원을 하였으며, 차별시정의 차원을 넘어 젠더, 퀴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편향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정성호 외 19명의 여야 위원들이 공동 발의했다가 다수의 국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10월 1일 최종 자진철회된 인권교육지원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공공기관 등 소속 공무원, 직원, 교원, 학생, 군인’ 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다. 인권교육지원법안의 문제의 조항인 제 2조 1호에서 ‘인권’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인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적지향’에 관한 차별금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어린이집부터 청소년에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적이며 성적지향이라고 가르치는 인권교육의 의무화가 시작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었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속력있는 시행령이 국가교육기관인 교육부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하달될 때,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 ‘동성애자를 향한 차별금지와 인격존중’의 권고를 넘어서, 만약 ‘복지차원에서 동성애라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지원하므로, 다양한 성적취향을 장려하는 방향’의 시행지침이 전달된다면, 교육계 뿐 아니라 대한민국사회 전체가 보편적 가치의 대혼란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종교적 교육철학이 확고한 사립학교나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편향된 ‘차별금지정책’의 일부 지침들이 ‘학교설립이념’과 충돌하여 사회적으로 문제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2017.12.14 국회에서 개최한 ‘여성가족부 성평등정책, 적법한가’포럼에서 강력 비판을 제기되었으며, 제 2차 기본계획안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위법하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제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을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로 확정하였다.

교육계와 학교현장에서의 충돌

인권교육지원법안과 차별금지정책을 둘러싼 정치권·국가기관·시민단체의 정책적 충돌이 학교의 담장 밖에서 격화되고 있는 동안, 교육계와 학교현장 곳곳에서 내홍을 앓고 있다. 현재까지 언론에 노출된 교육현장에서의 격론의 과정을 몇 가지 사례로 축약해보았다.

서울시교육청, 매년 '소수자 학생' 차별 조사한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매년 성소수자, 장애학생, 한부모·다문화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어떤 차별을 받는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학생인권 종합계획(2018~2020)을 2일 공개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 <중략>

학교의 규칙도 일부 학교에서 시행 중인 '교육 3주체 생활협약'을 권장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사용 금지하려면 학생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학교측이 '용모 단정'을 이유로 학생들의 머리 모양이나 신발·가방 등을 제한하는 교칙을 정할 때도 학생회와 협의해야 한다...<후략>

< 한국일보 2017. 11. 02 박세인기자 >

"경남 학생인권조례? 학교를 동성애 교육장으로 만들려는가"

경남도 교육청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일이 있었다.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인권 정신에 어긋난 것이라면, 이를 강제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략>

제7조 1항에 보면, '학생은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얼핏 보면,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30조 1항에 보면, '성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제17조 1항에서는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중략>

지난 11월 17일 여론조사 기관 "공정"에서는 경남지역에 사는 만 19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였다.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사람은 25.2%에 불과했으나, 반대는 두 배가 넘는 52.5%에 달하였다.

< 크리스천투데이 2018.12. 02. 이대웅 기자 >

동성애 옹호를 의무 교육하는 인권교육지원법(안)을 결사반대한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구급·보호시설,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의 모든 국가기관 등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인권교육을 의무

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성애를 의무 교육하는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을 결사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권교육지원법은 그동안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시켜 동성애를 강력히 옹호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를 두어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각종 예산지원을 통해 인권교육 기반을 조성 및 지원하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은 물론 모든 공무원, 군인 등에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안이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될 때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동성애)에 대하여 어떤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었다... <중략>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에 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활동들이 해왔다. 2002년 국어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삭제 권고하였고, 2003년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단 사유에서 삭제하기를 권고하였다. 2009년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과서 집필 기준을 권고하였으며, 동성간 성행위와 에이즈 인관관계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었다.... <중략>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항문성교와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이다."라고 4번씩이나 판결하였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선천적이지 않고, 절제되지 못한 부도덕한 성적욕망인 동성애는 인권이 될 수 없다. 에이즈 확산 등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는 부도덕한 동성애는 결코 옹호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국민들이 강력히 반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동성애를 인권에 포함하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인권교육이라는 명문으로 동성애 옹호교육을 의무 교육화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후략>

2018년 9월 27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300개 단체 연합)

서울시교육청의 '소수자학생 차별조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해설서에 따르면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서 제28조에는,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술된 문장 중 '성소수 학생에게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인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교내에서의 동성 간 교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되어질 수 있다. 특이한 지점은,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에서 제21조인데,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는데, '성소수자학생의 권리실현을 위한 예산 자원을 배정하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적극적인 표현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예산 자원 배정이 아닌, 권리를 향유하도록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수립한다는 매우 당황스러운 문장이 담겨있다.

학교라는 배움의 공간에서 동성이 아닌 '이성교제의 권리실현을 위해 예산 자원을 배정하고, 권리를 향유하도록 지원제도를 수립하라'는 권고가 서술되어 있다하더라도 학부모, 교사, 학생들 모두가 당황스러운 조레라고 여길텐데, '동성지향의 성소수자의 권리실현, 권리향유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수립하라'는 복지의 권리를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차별금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일반인들 다수에 존재한다. 하지만 앞서 제기한 '성소수자의 권리실현, 권리향유'라는 복지차원권고는 곧, 서울시교육청이 동성애문화에 대한 확산을 지향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 소수자 차별

학교는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이주민 학생이 폭력이나 위협, 따돌림, 차별적 언어 사용 등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주민 학생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다문화 교육, 문화 교류 활동 등을 통해 이주민 학생과 다른 학교 구성원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동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는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성소수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징계, 관계에 대한 중단 요구, 심리적 압박, 특정 외모에 대한 규제나 낙인, 비하나 혐오 발언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폭력, 따돌림 등을 중단시키고 예방하기 위해 성소수자 이해 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소수자 차별	<p>[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청소년의 인권보장) [아동복지법] 제3조(기본이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27조 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제7조</p>
	<p>◎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2003년 - 당사국들은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이 동 협약상의 모든 권리를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혹은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누릴 것(제2조)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근거에는 청소년들의 성적 지향과 건강 상태(HIV/AIDS와 정신보건상태를 포함)도 포함된다. 차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은 학대 및 다른 형태의 폭력과 착취에 더욱 취약하며, 그들의 건강과 발달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p> <p>◎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20, 2009년 - 당사국들은 개인의 성적 지향 때문에 ... 이 규약 상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 성별 정체성도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인정된다.</p>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타시도 교육지원청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주었고, 최근 경기도 교육청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일이 벌어졌다. 이와 같이 교육지원청 단위의 조례안에 대한 충돌 뿐만 아니라 학교 담장 내에서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2018년 학년 초, 흥동중학교 성소수자 인권강연이 취소된 것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날 충남 홍성군 흥동중학교에서는 한채윤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의 강연이 예정돼 있었는데, 한채윤씨가 강연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흥동중학교에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이로 인해 강연이 취소되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전화를 건 사람들은 “학교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을 강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서론에서 서술한 것처럼 교육의 현장은 ‘성소수자, 동성애문화, 차별금지, 인권교육’이라는 담론에 관하여 다양한 가치관들이 치열하게 충돌하며, 특정의 신념을 가진 단체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한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의 영역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혼란이 점점 더 가중화되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본 인권교육, 성소수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논쟁, 교육 현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충돌의 상황들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필자가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시도했던 ‘동성애 바라보기’라는 수업의 단상을 나누고 싶다. 이를 통해 기독교 학교에서 동성애관련수업에 대한 모형을 소개하겠다.

II. 기독교학교에서 동성애수업 방향

; 「 동성애 바라보기· 바로보기 」 수업의 단상 [斷想]

‘인권교육의 틀에서 제기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교육’

한국의 교육계 내에서 이전에 없었던 내용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이에 관해 1부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본 인권교육, 성소수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논쟁, 교육현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층들의 상황들’을 소개하였다.

최근 이러한 층들과 논쟁이 학교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기이하게도 혐오에서 역혐오로, 차별에서 역차별로 흘러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혐오에서 역혐오로, 차별에서 역차별로의 변곡점에 서있다

헤럴드경제에 의하면,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핑동이 10대 성소수자 15명을 상대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 응답자들이 교사의 부정적 발언으로 인해 자괴감을 겪은 사례가 많았다고 전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소수자 청소년 200명 가운데 92%가 다른 학생이 성소수자를 적대적이거나 모욕적으로 표현하는 상황을 경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³⁾ 이른바 혐오로 인해 성소수자가 겪은 혐오현상이다.

반면 진보적인 학문적 배경인 대학과 중등학교에서는 역혐오현상도 등장하고 있다. 사회현상에 대한 토론 중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소수의 학생이나 교원들을 문화문명자처럼 대하는 전반적인 분위기로 형성되어 오히려 역혐오로 인한 자괴감을 겪고 있다.

2018년 NewDaily⁴⁾에 의하면 또 하나의 차별금지법, 성중립 화장실설치⁵⁾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 특히 EBS 까칠남녀 '모르는 형님 : 성소수자 특집 2부'가 전파를 타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해당 방송에서 교복을 입고 출연한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들은 "국내에도 성중립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성소수자들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배뇨를 참아 방광염에 자주 걸린다는 게 이유였다. 실제로 또한 진보가치를 중심에 둔 한국의 모학교에서도 '성중립화장실'을 요청하는 학생들로 인해 학교 내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오히려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소수자들이 이런 문화전치현상(transposition)에 당혹스러워하거나 역혐오분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전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 성소수자혐오라는 현상이 소수자의 인권침해 」로 규정되면서, 오히려 「 단순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역혐오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소수의 권리가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 」으로 전환되고 있는 기이한 변곡점에 놓여있다고 보인다. 이는 다수의 일반인들의 동성애의 합법화 합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정치 그리고 교육의 영역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람,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와 프레임'을 심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인류애적 차원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신장을 위한 혐오반대'에 관하여 공감하지만, 비폭력적이며 합리적인 의사로 반대의견을 가진 다수의 일반인들을 '혐오론자'로 매도하며,

3) 헤럴드 경제(2018.05.17) 「 “교사, 동성애 비난에 자괴감” 혐오에 떠는 10대 성소수자 」

4) NewDaily(2018.01.10) [르포] 「 성범죄 우려 '성중립 화장실', 누굴 위한 것인가 」

5) 성중립 화장실이란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남녀 모두가 사용 가능한 공공화장실을 뜻한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性)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개념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다.

그들을 역혐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교육계 내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큰 파열음을 듣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계 내에서 제기된 교육문제들과는 다른 패턴으로 한국교육을 요동치게 할 돌개바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풀어내려는 시도는 우리에게 있는가?

이번 호에서는 필자가 학교현장에서 시도했던 '동성애 바라보기·바로보기'라는 수업을 소개 할까한다. 한 학기의 수업과정이 이 문제에 관한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발생할 근미래의 상황을 풀어낼 하나의 단초로서, 교육적 실험을 했던 짧은 단상을 나누려 한다.

교사, 수업으로 말하다

필자는 교육연구자이면서 동시에 교육자였기에, '동성애'의 문제가 학교담장 밖에서 일어나는 성인들의 요란스런 정책싸움으로만 보이지 않았다. '성적지향, 차별금지, 인권교육' 등에 관한 가치관의 논쟁을 벌어지는 동안, 필자 역시 여러 학교(사립학교, 대안학교 등)의 설립과 교육과정을 관여하면서, '동성애'로 인해 충격받고, 고뇌하고, 함께 앓이하는 상황들을 여러 곳에서 목격하게 되었다.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교육이란 이름으로 감히 조언할 수 없는, 혼란과 힘겨움 그 자체였다, 학생들에게 ...

두 번째 기고문에서는 '정책'이 아닌 '수업'으로 말하고 싶었다. 교육이란 정책이 아닌 삶으로 가르쳐지기 때문에, 정책으로부터 우리 주위에서 앓이하는 학생들에게로 시선을 옮기고 싶었다. 깨어 있는 교사라면, 특정의 신념을 가진 단체 혹은 기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정책들에 휘둘리지도 않으며, 수업으로 상담으로 그들과 함께 앓이를 해야 존재이기 때문이다.

20 여 년 전에도 그리고 최근 몇 년 전에도 한 학생이 찾아왔었다. 귀를 기울였다. '동성애'로 인해 여러 친구들 사이에 혼돈과 고뇌와 고통이 퍼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답답하여서 찾아온 학생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동성애 친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할 것인가?' 그 답을 찾고 싶어했다.

20 여 년 전에는 필자에게는 도울 수 있는 그 어떤 전문성도 지식도 없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한 학생이 찾아왔을 때는 무기력하게 있을 수는 없었다. 함께 답을 찾기 위해 '동성애 바라보기·바로보기'라는 수업을 개설하였고, 7~8명의 학생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사실 '동성애에 대한 나의 신념'은 확고했지만 강요할 수 없었다. 강요는 학생들을 더 아프게 할 뿐임을 알기에, 배설하다시피 던지는 가르침의 말은 그 어떤 변화의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함께 수업을 통해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학점제로 진행되는 학교였기에 필자는 이 수업을 개설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행히도 어떤 관리자도 선생님도 해당수업에 대해 묵언으로 함께 해주었다.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각자의 정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잠시 한 학기만 내려놓고, 다양한 분야에서 < 동성애찬성, 동성애 반대 > 양쪽의 입장을 조사해서 서로 충돌하게 하여 무엇이 옳은지 '가치관을 결정'하도록 돕는 방향의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첫 시간이 시작되었다.

먼저, 우리 수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목적에 대한 나누었다. 그 중에 기억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발췌했다.

- 학생1. 동성애자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스러워 답을 찾고 싶어왔습니다.
- 학생2. 종교적/비종교적/객관적/주관적 관점 혹은 역사적/법학적/정치적/심리적/ 병리적/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 학생3. 소수자의 인권은 어디까지 존중받아야하는 알고 싶습니다.
- 학생4. 종교적인 판단으로만은 시야가 좁아서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고 싶습니다.
- 학생5. 무지는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상대를 향한 폭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참여의사를 밝힌 이유들 하나하나가 '의미'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주었다. '이 수업은 매우 특별한 수업이 될 거야. 그러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선생님의 생각이 전달되는 수업이 아니길 바래. 그리고 여러분도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쌓인 문화적 경험으로 찬반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일방적인 정보에 세뇌되어 찬반을 결정하지 않기 바란다. 양쪽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비교하고 견주게 하자. 샘은 그대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고 싶단다.'

학생들은 기꺼이 동의해주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른바 '교육과정'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했다. 어떤 누구도 이에 관한 지침을 준 적이 없었다. 물론 이에 관한 교과서도 교사해설서도 없다. 세상에 없는 유일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만 했다.

'도덕이나 사회교과가 아닌 과학교과교사인데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가? 그러나 동성애가 단지 윤리적인 문제일 뿐인가? 아니다. 오히려 윤리적, 정치적, 문화학적, 의과학적, 법률적, 심리학적, 신학적 등 다양한 관점으로 통합적으로 답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정리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참조하며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교육과정 -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1) 윤리관점에서 동성애 바라보기 • 바로보기

'윤리의 정의,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윤리의 관점, 보편적 윤리란, 절대적 윤리의 존재 가능성, 결혼과 가족의 정의, 동성애와 윤리문제, 소수자의 정의, 성소수자의 인권의 범위' 등이 그 윤리적인 주제가 된다. 인간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윤리적 기준과 법적 기준을 생성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윤리의 존재이 있다면 전혀 다른 관점의 윤리적 토론이 가능하게 된다.

2) 의학적 • 생물학적 관점에서 동성애 바라보기 • 바로보기

동성 간(특히 남성) 성병 및 항문과 관련된 각종 질병 그리고 AIDS 전파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지점에 대한 찬반논쟁,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특정 형질의 유전자에 대해 발현되는가, 유전의 유무에 대한 상반되는 연구들의 최신 동향, '진화론적 관점에서 性的 목

적인 생식과 종족번식은 동성애를 지지하는가?', '절대적 초월자에 의한 性的 창조론적 관점은 동성애를 지지하는가?' 등에 관해 토론한다.

3) 법학적 관점에서 동성애 바라보기 • 바로보기

친 동성애 진영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와 반대진영의 차별금지법 철폐시도, 헌법 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군형법 위헌 의견을 낸 헌재소장후보,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를 주최한 학회 책임자 대법원장,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개정, 국가인권기본계획 제정 시도 등을 통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법적 논쟁 등을 다룬다.

4) 문화와 언론을 통한 동성애 바라보기 • 바로보기

성적 지향과 취향의 문제는 동성을 넘어서 어디까지(양성애, 소아성애, 수간)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 퀴어축제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언론에 등장하는 퀴어축제와 일반시민의 반응, 언론을 통한 커밍아웃의 역사 등을 다룬다.

5) 정치적 관점에서 동성애 바라보기 • 바로보기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의 동성애, 동성애의 옹호를 통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치인으로의 이미지구축,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정치공방, 군대 내 동성애에 관한 정치인들의 언론플레이 등을 다룬다.

6) 신학적 관점에서 동성애 바라보기 • 바로보기

퀴어 신학과 정통 신학자의 연구 논문을 대조하며 성경해석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각 신학자의 근거들을 견주어, 바른 해석을 탐구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학기동안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동성애를 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나의 확고한 신념을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혼돈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내 신념과 내 주장의 근거들을 일방적으로 강의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에게 가치로운 배움으로 다가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한쪽에 편향되지 않도록 동성애의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지성인들을 근거들을 충돌시키는 것은 어떨까? 일방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야한다. 학생이 주체로 참여하는 참여수업 즉 배움중심수업으로 구성해야한다. 이를 위해 대학원식으로 발제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가장 적절했던 것 같다. 연구하는 공동체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생겼다. 그래서 연구-발제-토론-에세이의 대학원식 교수법을 구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교수학습법 -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1. 선조사 : 여섯 가지 주제에 대해 2주마다 한 주제씩 조사해온다. 모든 학생은 해당주제에 대한 찬반 양쪽자료를 준비한다.

2. 진행자 : 각 주제별로 두 명의 담당학생(섬기미 1, 2)가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한다.

3. 교사역할

- ① 전체 진행자와 미리 상의하여 진행과정을 디자인한다. 수업을 위한 중요한 원칙을 세우고 설명한다.
- ② 학생들이 찾기 힘든 자료들의 경우 조사하여 미리 배포한다.
- ③ 학생들의 진행시 미숙한 부분을 보완하며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한다.
- ④ 에세이 평가를 통해 '동성애 바라보기'에 대한 학생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게 한다.
- ⑤ 에세이 평가 후 각 학생과 개인적으로 상담한다.

4. 수업진행과정

- ① 첫째주 : 10분 정도. 그 주 해당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찬성과 반대'측의 주장을 짧게 소개한다. 섬기미1의 진행에 따라 각 자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토론한다.
- ② 둘째주 : 섬기미2가 전 주의 토론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한다. 섬기미2의 진행에 따라 각 자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토론한다.

5. 수업의 중요 원칙

- ① 연구공동체 : 의사결정하는 모임이 아닌 연구공동체를 목적으로 한다.
- ②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적인 판단을 보류하고, 한 학기의 수업이 끝날 때 에세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다.
- ③ 열린 마음으로, 신념이 다른 학생을 설득하기보다 질문을 던지고 근거를 확인하고 생각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학기가 종료되면서 평가를 위해서 '에세이'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수업은 마무리 되었다. 아쉬운 것은 그 다음의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였다. 학생들 각자의 나름의 정답을 찾고 끝난 수업으로 마무리 된 것이다. 다행히도 평가 이후에 에세이를 활용해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상담하는 시간을 통해, 더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동성애 친구들 대해야하는 존중의 방안에 대해 나눔을 가지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실 필자는 한 학기 내내 중요한 고민을 안고 걸어가야 했었다.

" 가치중립을 언제까지 지킬 것인가? "

'교사 개인의 신념'을 수업에 개입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난제를 품고 계속 고민했다.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단계가 아닌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간관'에 관한 수업이라면 교사의 신념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과 그 반대인 생각 사이에 지속적인 줄다리기를 해야만 했다. 결국 본수업에서는 가치중립을 철저히 지키려했다. 통합적 이해의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어야했다.

다만 한 가지 장치를 해두었다. 만약 나의 신념을 물어보는 학생이 있다면, 강요가 아닌 감동으로, '설교나 설득이 아닌 성찰'하도록 상담과 조언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학생들과의 열린 만남의 공간을 열어두었다. 내 신념을 듣기 원한다면, 나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찾아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평가 이후에 에세이로 상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의미있었다.

기독교학교, 공립학교의 동성애교육 모델의 필요

이 연구는 이론에 관한 논문의 형태이기보다, 현장실천에 대한 방안연구에 가깝다. 기독교 학교의 현장에 있는 필자가, 기독교사로서 '동성애관련 수업'에 가져야했던 고민과 성찰을 담고 있다. 이 수업모델을 통해 이루고 싶은 바램들이 있었다.

즉 앞으로 이 수업모델이 여기 기독교학교에서 회자되고 토론되어지며, 기독교사들 간에 비판적 성찰을 통해 다양한 수업모델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했다. 이를 통해 기독교학교들에서 연구되고 실험될 '동성애관련 수업'의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보편적 언어로 번역되어, 근 미래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흐름이 우위에 놓이게 될 공립학교에 보급되므로, < 창조설계된 본래의 성에 대한 인권 >이 공교육 현장에서 우위에 놓이기를 바라는 바램이다.

현재까지 일부 기독교학교들은 동성애교육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동성애를 범죄로 혐오하는 특강'으로 일관하고 있어 보인다. 그 명암이 분명히 있다. 동성애 혐오의 강의로 각인되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동성애의 상황에 놓여 숨어서 이를 듣는 학생들에게는 심리적 고통을 더하여, 심지어 신앙을 내려놓을 수도 있게 된다. 교육적 선택이 '혐오에 관한 외부특강' 뿐인 것은 연구가 없다는 점을 의미하고 한다. 수업모델이 없도 없고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역시 없다. 기독교대안학교연맹 내에 이를 위한 연구와 논의가 일어나기를 기대해보며, 기독교학술동역회의 교육분과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공동연구를 제안하고 싶다. 그 연구는 좋은교사운동을 통해서 보편적언어로 번역되어 기독교사운동으로 보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방향은 '혐오전략'가 아닌, 필자가 제안한 모델처럼 '다양한 분야(윤리, 의학생물학, 사회학, 정치학, 법학)를 활용한 논쟁수업', '성에 대한 자유허용의 범위에 관한 논쟁수업모델' 등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맺으며

모든 인간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 인권은 왜곡된 인권이다.

인류가 선택한 수많은 선택이 인류번영과 기술문명을 야기할 뿐 아니라, 그 결과물들은 인류를 위협할 불특정의 살인류무기로 변화되었다. '미세플라스틱의 공격·미세먼지·분해되지 않는 쓰레기·후쿠시마 원전폭발·방사능·핵위기·인간복제·전쟁·멸종하는 수많은 생물종 등등' 수없이 많은 위험변인들이 인간을 포함한 생물권 멸종과 자연계의 대파괴를 야기하고 있다. 더불어 '동성애의 확산과 더불어 발생하는 질병과 전통가족해체'는 Homo sapiens sapiens (종교적 관점이 아닌 생물종의 관점에서)의 멸종의 서막이 될지도 모른다.

인간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아보아야한다. 자연과 인간을 향한 오만하고 절제없는 '인간의 정복욕과 인권욕망'이라는 덧에 대해서 ...

교육은 이에 관해 말해야한다.